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금융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이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IP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 포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이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국회 계류안	공정거래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공포 법령	ESG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입법/행정예고	중대재해	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에 정기적으로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명시, 시설의 소유주 등 관계인들이 시설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등.

#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b>이용우</b> (더불어민주당)</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에 따른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p> <p>출처:<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L2T0M4S2R1M1V6W4R1A1I2M7N9N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L2T0M4S2R1M1V6W4R1A1I2M7N9N7</a></p>	<p>한국경제 22.04.27. "대주주 꼼수합병에 개미만 죽어나"… '동원산업 방지법' 나왔다 [이유정의 경제법 토크아보기]</p> <p><a href="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275997i">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275997i</a></p>	<p>22.04.26. 제안</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b>김종민</b> (더불어민주당)</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 제안이유</p> <p>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p> <p>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의14)</p> <p>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안 제4조제2항의9)</p> <p>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안 제44조제4항)</p> <p>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4조의2제1항).</p> <p>마.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안 제44조의2제3항).</p>	<p>연합뉴스 22.04.27. 민주,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포함한 법안 발의</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182200001?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182200001?input=1195m</a></p>	<p>22.04.27. 제안</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바.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안 제44조의2제4항 및 6항).</p> <p>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10).</p> <p>아.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안 제44조의10제6항).</p> <p>자.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안 제 44조의12).</p> <p>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안 제 44조의13).</p> <p>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1항의6).</p>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2Q0E4O2C7R1E8R2I6I4Q4C2Y5E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2Q0E4O2C7R1E8R2I6I4Q4C2Y5E6)

##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 제안이유</p> <p>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p> <p>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p> <p>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p>	<p>매일경제 22.04.28. [단독] 폐지론 무성했던 '온플법' 존치 가닥</p> <p><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7965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79654/</a></p>	<p>21.01.28. 제안</p> <p>21.02.1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21.06.30. 소위 상정</p> <p>21.11.18. 소위 상정/ 제안설명</p> <p>21.11.24. 소위 상정/ 제안설명</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p> <p>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p> <p>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p> <p>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p> <p>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p> <p>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p> <p>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p> <p>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p> <p>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p> <p>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p> <p>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p>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P1D0W1H2R8Z1U6K117B3F7G9F3E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P1D0W1H2R8Z1U6K117B3F7G9F3E7)

###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p> <p>출처: <a href="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a></p>	<p>한국경제 22.04.24.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부실 작성하면 등록취소까지"... 시행규칙 개정</p> <p><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237437i">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237437i</a></p>	<p>22.04.25. 일부개정</p> <p>22.04.25. 시행</p>

##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p>■ 개정이유</p> <p>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p> <p>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처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p> <p>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p> <p>-안전보건규칙 개정('21. 11. 19.)으로 달비계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건설용 리프트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p> <p>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p> <p>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p> <p>2)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p>	<p>뉴스1 22.05.01.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 개정안 입법예고</p> <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665971">https://www.news1.kr/articles/74665971</a></p>	22.04.28. ~ 22.06.07.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참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p> <p>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p> <p>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참고시설과 터널을 추가</p> <p>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p> <p>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p> <p>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으로 운영하여 왔으나</p> <p>2) 2019년 6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 법령 개정요구(한국수력원자력)가 있어 반영함</p> <p>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p> <p>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p> <p>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 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샙트 등)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li> <li>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li> <li>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를 면제함</li> </ol> <p>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사 및 차고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 시 화재위험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의 특권을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함</li> <li>2)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삭제함</li> </ol> <p>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li> </ol> <p>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li> <li>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li> </ol>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3)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불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p> <p>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p> <p>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p> <p>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p> <p>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p> <p>2)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 없는 위험물 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등이 시험과목에 편성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를 시험과목에 편성</p> <p>3)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p> <p>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p> <p>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 관계로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영업범위도 차등화함          -(현행) 관리사 1명 + 보조기술 인력 2명 / 모든 건축물 점검          -(개선) 전문관리업(관리사 3명 + 보조 기술인력 6명) / 모든 건축물 일반관리업(관리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 / 1,2,3급 건축물</p> <p>2) 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현행) 차등 없음 → (개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p>		
			출처: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36">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36</a>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실 및 기사

### [중앙일보][사설]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2022.05.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101#home>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이달 3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59건 발생했고, 9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음. 법 시행 후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쓰러진 것. 사망사고는 주로 제조업(45.8%)과 건설업(37.3%)에서 발생함.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504곳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그쳤는데 2024년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들어있음.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경영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하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됨.

### [매일경제][오피니언] 중대법 강박 걸린 고용부를 보면서(2022.05.04.)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2/05/394679/>

**주요내용**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탓에 시행 전부터 '1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척 컸음.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도 공장 사고 현장의 사무실과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후로 석 달 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1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형사소송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겉면 걸리는 법'이라는 것과 모호함 탓에 자백 없이는 '유죄 입증 어려운 법'이라는 것, 수사 기간 장기화는 이미 예고됐었음.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압수수색을 총 17회 진행하고 사업장 55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수사 중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총 58건인데 그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1건임.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논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함.

## [한겨레][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 사장이 증거인멸했다니(2022.05.0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1284.html>

**주요내용**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토사 붕괴 조짐을 알고도 작업을 강행한데다, 사고가 나자 대표이사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번 사건은 기업 대표자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줌.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 [한국경제][기사]이들에 한번 중대재해...CEO엔 '범죄자 낙인'(2022.05.0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0282931>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음.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방 효과는커녕 기업과 CEO만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현재까지 CEO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21건이며, 입건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와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삼표 산업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세 곳도 중대재해로 수사받고 있음. 국내 한 대형 로펌 산업안전 분야 변호사는 "1~2년 뒤면 국내 주요 기업 CEO 상당수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 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 IP팀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